

농 촌 진 흥 청

시 정 요 구

제 목 2014년 농촌○○○○마을 시범사업 1개소 용도의 집행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양양군

내 용

양양군○○○○센터에서는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노후의 질적 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4년 농촌○○○○마을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양양군○○○○센터에서는 2014년 농촌○○○○마을 육성 시범사업 1개소(○○리 마을/대표 ○○○) 사업비 50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집행카드를 이용하여 사업목적에 맞지않게 주류를 구입(5회, 176,400원)을 하였으나, 사업비 반환을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양양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예산 176,400원을 반환하시고,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